

1. 개정이유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기준이 다른 법률에 비해 과중함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여 승강기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기술자 경력 인정범위 확대(안 제28조, 별표 8)

- 승강기 유지관리 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승강기 자체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나.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기준 현실화(안 제37조 및 제38조)

- 중대한 사고의 기준이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하여 승강기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대사고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추가 조사대상인 치료 ‘1주 이상’을 ‘3주 이상’으로 조정하되, 치료 1~2주 진단서 발급하는 중대한 고장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안부의 직권으로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후”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1주”를 “2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주”를 “6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1주”를 “3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00. 00.>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

1.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구분기준
고속 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 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2.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등록기준

가. 고속 승강기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인력	책임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8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설비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틸새게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전기회로시험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나. 중저속 승강기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인력	책임 기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인력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틸트세계이지

	3) 아들자 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밝기측정기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전기회로시험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비고

1. 유지관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추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2.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가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의 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일반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하고,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기준 인력으로 확보한 사람은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에서 제외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2. ----- ----- ----- ----- <u>사람으로서</u>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	3. ----- ----- -----

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
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
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전
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
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
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
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
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기계
·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
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
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사람으로서 -----

4. -----

-- 사람으로서 -----

5. -----

----- 사람

으로서 -----

6. -----

----- 사

람으로서 -----

7. -----

사람으로서

[illegible]

9. (현행과 같음)

②

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 ----- -----.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 <u>사람으로서</u>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 -- <u>사람으로서</u>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 -- <u>사람으로서</u> ----- -----
4.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 ----- -- <u>사람으로서</u> ----- -----
5.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 ----- ---- <u>사람으로서</u> ----- -----
6.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 ----- ----- <u>사람으로서</u>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

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생략)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생략)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

장)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2주 -----

3. -----

-- 6주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

--.

1. (현행과 같음)
2. -----

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u>1주</u>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u><신 설></u>	----- ---- <u>3주</u> ----- ----- ----- ----- ----- ----- 3.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u>
--	---